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011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2. 20.
발 의 자 : 서정숙 · 임병현 · 최승재
백종현 · 양금희 · 조은희
신원식 · 이종성 · 김 응
박대출 · 윤주경 · 강대식
횡보승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간 1천여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암은 지난 30여년 간의 의료서비스 발달로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80%에 달하고 있으나,

성인암에 비해 고강도 · 노동집약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아청소년암의 의료적 특성과 낮은 수가가 맞물려 관련 의료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.

또한 성인암에 비해 의료인력의 투입량이 많으면서도 치료비용과 수가는 오히려 낮아, 관련 진료를 계속하려는 병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, 이로 인해 서울 외 지역의 평균 70%의 환자가 거주지를 떠나 치료를 받는 극심한 수도권 쓸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,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9조의2 신설 등).

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의 제목 중 “지역암센터”를 “지역암센터 등”으로 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진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소아청소년암거점병원(이하 이 조에서 “거점병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거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

2.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, 사회적 지원

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

4. 소아청소년암의 생존율 및 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연구

5. 그 밖에 소아청소년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거점병원의 인력 및 운영에

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거점병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절 중앙암등록본부, 지역암등록본부,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<u>지역암센터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절 중앙암등록본부, 지역암등록본부,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<u>지역암센터 등</u></p> <p><u>제19조의2(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진료 및 재활서비스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(이하 이 조에서 “거점병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거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</u> <u>2. 소아청소년암환자 및 소아청소년암생존자의 성장을 고려한 정서적, 사회적 지원</u> <u>3.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연계</u>

4. 소아청소년암의 생존율 및
환자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
연구

5. 그 밖에 소아청소년암관리에
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
범위에서 거점병원의 인력 및
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
수 있다.

④ 거점병원의 지정 및 운영
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한다.